



【검토보고서】

2015. 10. 20(화)
제 262 회 임시회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전태언】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 제안자 : 양주시장(사회복지과)
- 제출일 : 2015년 10월 7일
- 검토일 : 2015년 10월 8일

2. 제안이유

노인들의 복지 욕구에 맞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에 관한 지원 규정 마련(안 제5조)
- 요보호 노인에 관한 지원 규정 마련(안 제6조)
- 노인주거복지 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9조)
- 표창기준 마련(안 제10조)

4. 검토의견

가. 법령검토

-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1)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치조례이며
- 개정안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과 노인활용센터 및 요보호 노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나. 정책 및 내용검토

- 안 제4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노인활용센터의 신고에 대한 절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여가시설의 확충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 시설의 증가는 예산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의 수 및 지원범위를 조절하여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노인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 방향이 세워져야 할 것임.

다. 재정검토

-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향후 5년간 14개 사업에 총 5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15억원은 보조금으로 잔여 42억원은 시비로 부담하여야 함.

-
- 1)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형식검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음

마. 절차검토

-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

바. 의정협의회 결과

- 제19차 의정협의회시 의견을 반영하여 노인활용쉼터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였고(안 제2조) 노인복지증진계획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안 제3조) 노인활용쉼터에 대한 신고절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안 제5조~ 제6조).
- 또한, 경로당 관리업무를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 위탁하도록 정한 사항은 삭제하였음.